



2024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신입생 모집요강「가 군」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1. 입학전형의 기본원칙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책임 있는 공공정책법률가, 봉사하는 시민생활법률가, 공정한 형사전문법률가, 실용적 기업법률가, 개방적 국제법률가, 후원하는 문화법률가로서의 유능한 참 법률가 양성이란 교육목표 실현을 위하여 다음의 원칙으로 학생을 선발함.
 - 자기소개서, 사회활동경력, 봉사활동경력, 인성·품성 등을 평가하여 입학자의 다양성 확보
 - 공인영어시험성적, 학부성적, 법학적성시험성적 반영으로 입학자의 학문적 수월성 확보
 - 신체적 또는 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사회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을 실시하여 법조인으로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 제공으로 사회통합 노력 실천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신입생 선발을 위한 기준과 절차의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 및 본 법학전문대학원 제규정을 준수하며, 가능한 모든 노력을 기울임.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은 입학전형의 공정성과 타당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입학전형위원회 및 입시 공정관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함.

2. 전형일정

※ 입학원서는 인터넷(유웨이 사이트)을 통해 접수하며, 인터넷 접수 후 입학원서를 출력하여 제출(증빙)서류와 함께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일시	비고
원서접수	2023.9.18.(월) 9:00 ~9.22.(금) 18:00	본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lawschool.cau.ac.kr) 및 (주)유웨이어플라이(http://www.uwayapply.com)
서류제출	2023.9.18.(월) ~9.25.(월) 9:00 ~ 17:00	- 방문접수: 평일 17시까지 - 등기우편접수: 마감시간 이내 도착분에 한함 - 토요일은 휴무일로 제외 - 평일 점심시간(12시~13시)은 접수하지 않음 - 우편 주소: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법학관(303관) 6층 610호)
제1단계 합격자 발표(예정)	2023.10.27.(금) 14:00	본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lawschool.cau.ac.kr)
심층면접(예정) [가군]	2023.11.4.(토)~11.5.(일)	수험생 유의사항 참조(추후 확정)
최초합격자 발표(예정)	2023.12.1.(금) 14:00	본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lawschool.cau.ac.kr)
최초합격자 등록	2024.1.2.(화)~1.3.(수)	본교 지정 금융기관(추후 확정)
1차 추가합격자 발표(예정)	2024.1.5.(금)	본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lawschool.cau.ac.kr)
1차 추가합격자 등록(예정)	2024.1.8.(월)~1.9.(화)	본교 지정 금융기관(추후 확정)

3. 모집인원

○ 정원내

모집시기	전형유형	모집인원
가군	일반전형	46명
	특별전형	4명
계		50명

○ 정원외

- 2024학년도 '정원외 인원'의 선발은 2023학년도에 발생하는 결원인원에 따라 정해지며, 별도 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2024학년도 입학전형 최종결과의 예비후보자 중에서 총점 순으로 선발함. 단, 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 제3항)

※ 2023학년도 결원인원 확정일 : 2024.2.29.(목)

4. 지원자격

○ 공통사항 (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 국내외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 취득자 또는 2024년 2월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 관계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학력을 인정받는 경우 학위를 취득한 자)
-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성적을 제출하는 자
-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 24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시행한 정규시험(정기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공인영어시험 점수가 아래의 기준 점수 이상인 자(원서접수 후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공인영어시험성적표를 필히 제출하여야 함.)

[공인영어시험 기준 점수]

TOEIC	TOEFL(IBT)	NEW TEPS
700점 이상	71점 이상	264점 이상

○ 특별전형 지원자격

유형	지원자격
신체적 배려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본인에 한함)
경제적 배려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그 자녀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또는 그 자녀(구 우선돌봄차상위가구)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자녀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또는 그 자녀
사회적 배려대상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5)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읍·면)지역 소재 중·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특수목적고, 자율형학교(자율형사립고, 자립형사립고) 졸업생은 제외함)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본인에 한함)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대상자(본인에 한함)
	8)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재원 경력자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또는 그 자녀

-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기 평가기준에 의거 특별전형 모집인원 4명 중 2명은 「경제적 배려대상」 유형 중 위 1)~3) 항목에 해당하는 지원자에서 우선 선발함. 단, 우선선발대상 유형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없거나 수학능력이 현저히 미달할 경우 그 결원만큼 다른 특별전형 유형의 지원자 중에서 선발함.
- 지원 자격에 대한 심사는 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실시하며, 지원 자격 확인을 위하여 별도의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 특별전형 지원자 중 특별전형 지원 자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지원자의 동의와 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일반전형으로 전환됨.

5. 비법학사 및 타대학학사 쿼터

구분	선발비율	선발인원
비법학사	정원 내·외 입학자 합산인원의 50% 이상	정원 내·외 입학자 수에 대해 선발비율로 환산하여 확정 (전형 종료 시 최종 확정)
타대학학사	정원 내·외 입학자 합산인원의 40% 이상	정원 내·외 입학자 수에 대해 선발비율로 환산하여 확정 (전형 종료 시 최종 확정)

- 다음의 경우 타대학 학사학위 취득자로 간주함. (최초학위 취득대학 기준)
 - (1) 본교 이외의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본교 대학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 (2) 본교에 입학하여 재학 중 타대학으로 일반편입하여 해당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3) 타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본교에 학사편입 혹은 입학하여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다음의 경우 비법학사로 지원 가능 (복수의 학위를 가진 경우 법학사/비법학사를 선택하여 지원 가능)

- (1) 법학사 소지여부와 관계없이 다른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2) 복수전공 등을 통하여 법학사와 비법학사 학위를 동시에 취득한 경우
- (3) 법학사 취득 이후 학사편입 혹은 입학에 통하여 다른 전공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경우

○ 기타

- (1) 본교에 입학하여 졸업한 자가 타대학에 학사편입 혹은 입학하여 해당대학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본교 출신자로 간주함.
- (2) 타대학 학사학위 취득 또는 비법학사 해당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심사 판단함.
- (3) 타대학학사 쿼터나 비법학사 쿼터 비율에 따른 선발인원 산출 시 소수점 이하는 올림하여 계산함.

6. 전형방법

전형유형(일반전형, 특별전형)							
전형요소	1단계(4배수 선발)				1단계 총점	2단계 (심층면접)	전형 총점
	법학적성시험 성적(논술제외)	공인영어성적	학부성적	서류심사			
점 수	100점	100점	100점	100점	400점	100점	500점
기본점수	75점	95점	85점	80점	335점	90점	425점
실질 부여점수	25점	5점	15점	20점	65점	10점	75점
1단계	38.4%	7.6%	23.0%	30.7%	100%	-	-
실질반영률	(25/65)	(5/65)	(15/65)	(20/65)	(65/65)	-	-

○ 반영방법

- (1) 법학적성시험성적(논술 제외)은 표준점수 130점 이상을 100점으로 표준점수 85점 미만을 75점으로 하여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반영점수를 산출함.

LEET 표준점수	반영점수
130점 이상	100점
125점 이상 ~ 130점 미만	99점
120점 이상 ~ 125점 미만	98점
115점 이상 ~ 120점 미만	97점
110점 이상 ~ 115점 미만	95점
105점 이상 ~ 110점 미만	93점
100점 이상 ~ 105점 미만	91점
95점 이상 ~ 100점 미만	87점
85점 이상 ~ 95점 미만	80점
85점 미만	75점

- (2) **공인영어성적**은 유형별로 각각의 최고점수를 100점으로 최저점수를 95점으로 하여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반영점수를 산출함.

TOEIC	TOEFL(IBT)	NEW TEPS	반영점수
965-990	115-120	458-600	100점
900-960	100-114	370-457	99점
850-895	90-99	336-369	97점
800-845	80-89	309-335	96점
700-795	71-79	264-308	95점

- (3) **학부성적**은 평점평균 4.50 만점을 기준으로 4.10 이상을 100점으로 평점평균 2.40 미만을 85점으로 하여 아래의 환산표에 따라 반영점수를 산출함.

평점평균(4.50 만점 기준)	반영점수
4.10 이상 ~ 4.50 이하	100점
3.80 이상 ~ 4.10 미만	99점
3.50 이상 ~ 3.80 미만	98점
3.10 이상 ~ 3.50 미만	96점
2.40 이상 ~ 3.10 미만	90점
2.40 미만	85점

- **학부성적기준이 4.50 만점 기준이 아닌 경우, 원서접수 시 학부성적을 기재한 대학 측으로부터 4.50 만점 변환성적표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단, 해당 대학 측에서 4.50 만점 변환성적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본교 4.50 만점 변환성적기준을 적용하여 성적 반영함.)

- **일반편입**의 경우 1단계 학부성적에서는 편입 후 성적을 반영하고, 서류심사에서는 전적대학 성적을 포함하여 모든 사항을 반영함.
- **학사편입**의 경우 수험자가 졸업한 다수 대학 중 한 곳만 선택하여 기재할 수 있음. 그 기재한 대학의 성적표를 기준으로 함.
- **외국 소재 대학**의 학부성적 환산은 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름.

(4) **서류심사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최고 100점에서 최저 8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함.

(5) **심층면접성적**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최고 100점에서 최저 90점 사이의 점수를 부여함.

(6) 각 요소별 성적산출방법은 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임.

○ 서류심사 평가지표

(1) 전반적 학업성취도

- 정량지표의 질적 평가
- 학업성적의 발전경향 등

(2) 잠재성 및 참법률가적 소양

- 영어 외의 제2외국어 등
- 법무관련 업무수행에 적합한 특기

(3) 전문직 자격 및 사회경력보유자

-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외국변호사 등의 자격(면허) 보유
- 5급 이상 국가고시 및 각종 공무원시험 등의 합격
- 공공기관, 기업체 근무경력 등

- (4) 서류심사 시 원서 및 제출한 모든 서류에 기재된 개인식별정보는 음영처리하여 평가하며, 개인식별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경우 반드시 **핑크색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제출해야 함.
- (5) 자기소개서 및 기타 제출서류 등에 본인 이름 및 출신대학명,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전형에서 특혜를 받거나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됨. 이를 위반한 때에는 실격조치 함 (광의적 직종명 기재 시 감점조치 함).

※ 개인식별정보: 성명, 사진, 학번, 생년월일, 수험번호, 주민번호, 연락처, 이메일, 집주소, QR코드, 유추가 가능한 동아리(학회)명 및 장학금(수여기관)명, 출신학교(발급처, 워터마크 등 유추가능한 정보 포함), 보호자(친인척)성명, 보호자(친인척)직장(직업)명, 보호자(친인척)주소, 보호자(친인척)연락처, 기타 유추문구

○ 심층면접 평가방법

- (1) 개별면접으로 진행함. 면접 시 개인식별정보는 음영처리하며, 가번호를 부여하여 평가함.
- (2) 문제 제시형 질의응답 등을 통하여 지문이해도, 문제해결능력, 논리적·창의적 사고능력, 의사소통능력, 참법률가로서의 가치관, 정서적 안정성, 인성, 잠재력과 발전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평가함.
- (3) 외부위원을 포함한 면접위원으로 구성하며, 무자로 면접으로 진행함. 극도의 정신불안 등 학습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결격될 수 있음.

7. 장학제도

- 입학장학생(성적우수, 사회적 취약계층)은 장학규정에 근거하여 본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위원회에서 선발하여 지급함.
- 재학기간 중 최우수인재, 성적, 사회적 취약계층, 각종 실습 및 국내외 연수 우수자, 모의재판 및 각종 경연대회 입상자, 봉사우수자 등에게 장학혜택을 부여하는 차별화된 다양한 장학제도 운영함. (본 법학전문대학원 장학위원회 심사 선발)
- 특별전형 입학자의 경우 입학 이후 한국장학재단이 선정한 소득분위에 따라 장학혜택이 변동·제한될 수 있음.

8. 유의사항

- (1) 모집기간 군이 같은 대학원 간에는 복수지원을 금지합니다. 다만, 모집기간 군이 다른 대학원 간에는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 (2) 모든 전형 일정이 종료된 후에 2개 이상의 대학원에 이중등록은 금지합니다.
- (3) 전형 종료 후 모든 대학원의 지원, 합격, 등록 상황 등을 전산 등의 방법으로 조회하여 금지된 복수지원과 이중 등록 사실이 확인되면 합격을 취소합니다.
- (4) 제출서류(입학원서 출력본 포함)를 지정한 기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결격 처리합니다. 지원 당시 학사학위취득(졸업)예정자로서 학위취득(졸업)예정증명서를 제출하고 합격한 지원자는 2024년 2월 29일까지 학위취득(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를 본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로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5)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원본 제출이 현저히 곤란할 경우에 한해 본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에서 원본대조 확인을 받아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서류제출 기간 중 원본대조 가능)
- (6) 외국대학 출신자의 경우 제출서류를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해야 하며, 학력조회에 관한 소명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7) 입학원서 접수 당시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는 물론 접수 후 지원 자격을 상실한 지원자는 결격 처리 합니다. 또한 지원 자격 불비가 추후 발견될 경우에도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허가를 취소하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8)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인터넷 입력, 작성 오류, 기재 사항 누락, 판독 불능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9) 접수가 완료된 후 입학원서 접수의 변경 및 취소는 불가능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10) 합격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며, 지원자가 합격자 발표 당일 본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school.cau.ac.kr>)를 통해 직접 확인하여야 합니다.
- (11) 제출서류의 허위기재, 위조, 변조와 대리시험 및 기타 부정행위를 한 자는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하고, 추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도 입학 전후를 막론하고 합격 또는 입학 허가를 취소할 뿐만 아니라 향후 본 법학전문대학원의 지원 및 입학에도 제한을 받습니다.
- (12)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는 항시 연락(전화)이(가) 가능해야 하며, 전화번호 및 주소의 오기 또는 변경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본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02)820-64881로 통보해야 합니다.
- (13) 심층면접 당일 소음을 유발하거나 부정행위의 소지가 있는 휴대폰, 전자시계, MP3, 미디어플레이어 등의 전자 기기는 전원을 끈 후 진행요원에게 맡겨야 하며, 만일 심층면접(대기 및 이동시간 포함) 진행 중 휴대폰 등 각종 전자기기의 휴대 또는 사용 시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퇴실조치 합니다.
- (14) 합격자 발표 시 예비후보자 발표는 일반전형 모집인원의 63%인원(75등까지)을 예비후보자로 순위 공개합니다. (최초합격자 발표 시에만 공지함. 특별전형 예비후보자는 발표하지 않음.)
- (15) 본 입학전형에 지원한 모든 지원자는 원서접수 및 서류제출과 동시에 본 법학전문대학원이 제출서류 등의 사실여부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의 사실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발급기관 등에 자료를 요청하고 제공받기 위해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16) 입학전형과 관련된 사항의 공고 및 게시 등은 개별통지 하지 않고, 본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school.cau.ac.kr>)를 통해 공지하니 이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항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7) 입학 후 최초 1년간은 부득이 한 경우(질병의 경우 심사 후 허가-최근 3개월 이내 종합병원 이상 진료기관의 진단서 첨부)를 제외하고는 휴학을 불허합니다. (시험 등 준비, 직장근무 등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 (18) 군복무 중이거나 이에 상응하는 과정(특례보충역 등)에 있는 자의 경우 2024년 2월 29일 이전에 전역 하지 못 하더라도 지원할 수 있습니다.
- (19) 특별전형의 경우 경제적 여건 확인을 위해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20) 최종합격자 기준 출신학부(전공), 성별 현황 및 정량평가 요소별 평균과 상위 25%, 50%, 75% 지점 점수를 공개합니다.
- (21) 본 입학전형 안내에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9. 서류제출 안내 (평일 17시까지)

○ 제출방법: 직접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

(06974) 서울특별시 동작구 흑석로 84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법학관 303관 6층 610호)

○ 제출기한: 2023.9.18.(월) ~ 9.25.(월) 9:00 ~ 17:00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임)

* 등기우편접수는 2023.9.25.(월) 마감시간 내 도착 분까지 유효함. 점심시간(12시~13시)은 접수하지 않음.

○ 제출서류: 입학원서 및 제출할 모든 서류에 기재된 **개인식별정보는 반드시 핑크색 형광펜으로 표시하여 제출되어야 하며, 그 외의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습니다.**

* 개인식별정보: 성명, 사진, 학번, 생년월일, 수험번호, 주민번호, 연락처, 이메일, 집주소, QR코드, 유추가 가능한 동아리(학회)명 및 장학금(수여기관)명, 출신학교(발급처, 워터마크 등 유추가 가능한 정보 포함), 보호자(친인척)성명, 보호자(친인척)직장(직업)명, 보호자(친인척)주소, 보호자(친인척)연락처, 기타 유추문구

(1) 공통사항(일반전형 및 특별전형)

* 제출서류는 상기 순서대로 정리하여, **단면으로 출력**하고 집게로 제출서류의 좌측상단을 고정하여 제출함. (제본이나 바인딩 등 금지)
 * 대학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서는 대학의 **워터마크가 없는 증명서**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예: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학적부, 장학금수혜증명서 등의 제증명서)

서류명	비고	
입학원서	. 인터넷을 통해 접수한 후 입학원서 출력 제출	
자기소개서	. 본 법학전문대학원 지정양식(http://lawschool.cau.ac.kr 입학안내-자료실)	
학부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 워터마크 없는 증명서로 발급)	. 졸업예정자는 졸업예정증명서 제출 (졸업예정자로 합격한 지원자는 반드시 2024.2.29.(목)까지 졸업증명서 제출) . 편입학한 경우 전적대학 졸업증명서도 제출(일반편입의 경우 재적증명서 제출) . 외국대학 출신자의 경우 해당서류 원본을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 * 중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 본교에서 학력조사가 불가하므로, 학사학위에 대하여 '中國高等教育學歷調查報告'를 추가로 첨부하여야 함 (www.chsi.com.cn)
	대학 성적증명서 (* 워터마크 없는 증명서로 발급)	. 졸업예정자는 2023학년도 제1학기까지의 성적증명서 제출 (졸업예정자로 합격한 지원자는 반드시 2024.2.29.(목)까지 전학년 성적증명서 제출) . 편입학한 경우 전적대학 성적증명서도 제출 . 성적증명서에는 전체 학년 총 이수학점 수, 총 평점평균(4.50 만점 기준) 및 백분위환산 점수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성적증명서에는 반드시 4.50 만점 기준의 평점평균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하며 , 학부성적을 입력한 대학 측에서 4.50 만점 변환성적표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본교 4.50 만점 변환성적기준을 적용하여 성적을 반영함. . 외국대학 출신자의 경우 해당서류 원본을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 . 외국대학 출신자는 출신대학의 이수학기, 성적산출기준 등이 성적증명서 뒷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별도의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대학 학적부 (* 워터마크 없는 증명서로 발급)	. 편입학한 경우 전적대학 학적부도 제출

서류명		비고
대학원	대학원 재적관련 증명 (* 워터마크 없는 증명서로 발급)	. 대학원에서 학위를 취득한 경우: 석·박사학위수여(예정)증명서 . 대학원 재학(휴학) 중 또는 제적된 경우 재적증명서 제출 . 외국대학 출신자의 경우 해당서류 원본을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
	대학원 성적증명서 (* 워터마크 없는 증명서로 발급)	. 수학한 적이 있는 모든 대학원의 성적증명서 제출 . 외국대학 출신자의 경우 해당서류 원본을 한글로 번역 공증하여 제출
	대학원 학적부 (* 워터마크 없는 증명서로 발급)	. 수학한 적이 있는 모든 대학원의 학적부 제출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 원서접수 마감일 이전 24개월 이내에 대한민국에서 시행한 정규시험(정기시험)에 응시하여 취득한 공인영어시험성적표 . 원서접수 후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공인영어시험성적표 제출
법학적성시험 성적표		. 주관기관이 발행한 2024학년도 법학적성시험 성적표
경력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자격증 및 면허증		. 해당자에 한함. - 공인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공인노무사, 외국변호사 등의 자격(면허)보유자 - 5급 이상 국가고시 및 각종 공무원시험 등의 합격자
사회봉사활동 증빙서류		. 해당자에 한함.
군복무자의 경우		. 취학허가서 또는 전역예정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본 법학전문대학원 지정양식(http://lawschool.cau.ac.kr 입학안내-자료실)

(2) 특별전형

유형	지원기준	제출서류
신체적 배려 대상	1)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으로 등록된 자(본인에 한함)	o장애인증명서(발급처: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o자기확인서(본 법학전문대학원 지정양식)
경제적 배려 대상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그 자녀	o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발급처: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o자기확인서(본 법학전문대학원 지정양식)
	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라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계층 본인 또는 그 자녀	o자활근로자 확인서(발급처: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o자기확인서(본 법학전문대학원 지정양식)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 계층으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대상자 또는 그 자녀(구 우선돌봄차상위가구)	o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처: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o자기확인서(본 법학전문대학원 지정양식)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또는 그 자녀	o한부모 가족증명서 (발급처: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o자기확인서(본 법학전문대학원 지정양식)
	5)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또는 그 자녀	o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증명서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o자기확인서(본 법학전문대학원 지정양식)
사회적 배려 대상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자녀	o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등급 및 담당자 연락처 기재) (발급처 :국가보훈처) o자기확인서(본 법학전문대학원 지정양식)
	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본인 또는 그 손·자녀	o독립유공자(유족)확인원 (발급처 :국가보훈처) o자기확인서(본 법학전문대학원 지정양식)
	3)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o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발급처 : 시·군·구·읍·면·동 주민센터) o자기확인서(본 법학전문대학원 지정양식)
	4)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자녀	o부모의 혼인관계증명서 o부모의 국적관련 증명서 또는 귀화증명서 o자기확인서(본 법학전문대학원 지정양식)
	5)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읍·면)지역 소재 중·고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특수목적고, 자율형학교(자율형사립고, 자립형사립고) 졸업생은 제외함)	o중·고교 교육과정 졸업증명서 o중·고교 교육과정 학교생활기록부 o주민등록초본(주소변동내역 포함) o자기확인서(본 법학전문대학원 지정양식)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자(본인에 한함)	o의상자 증명서(등급 및 담당자 연락처 기재) (발급처 : 보건복지가족부) o의상자 인정결과 통보서 o자기확인서(본 법학전문대학원 지정양식)
	7)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대상자(본인에 한함)	o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보험급여결정통지서 (발급처 : 근로복지공단) o보험급여 지급확인원 (발급처 : 근로복지공단) o자기확인서(본 법학전문대학원 지정양식)
	8)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재원 경력자	o아동양육시설보호사실 확인서(병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15호 2서식) o아동복지시설 기관장 또는 소속 사회복지사의 추천서 o아동복지시설 인허가증 사본 o자기확인서(본 법학전문대학원 지정양식)
	9)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 또는 그 자녀	o5.18 민주유공자 확인원 o자기확인서(본 법학전문대학원 지정양식)
* 지원자 본인이 자녀인 경우 추가제출서류		①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와의 관계 증명, 부 또는 모를 기준으로 발급) ② 주민등록등본

- * 법학전문대학원 제3주기 평가기준에 의거 특별전형 모집인원 4명 중 2명은 경제적 배려대상 유형 중 위 1)~3)항목에 해당하는 지원자에서 우선 선발함. 단, 우선선발대상 유형에 해당하는 지원자가 없거나 수학능력이 현저히 미달할 경우 그 결원만큼 다른 특별전형 유형의 지원자 중에서 선발함.
- * 특별전형 제출서류는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급된 것이어야 함.
- * 자기확인서에는 가구의 실질 소득수준, 소득원, 생계책임자, 거주형태 등 본인이 사회적 취약계층에 포함된다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상세히 기술해야 함.

10. 합격자 결정

- (1) 제1단계 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제2단계(심층면접) 전형을 실시합니다. 다만, 제1단계 전형에서 동점자가 있을 경우 동점자 모두를 선발합니다.
- (2) 전형의 모집인원 범위 내에서 총점 순으로 비법학사 및 타대학 쿼터를 고려하여 합격자를 결정합니다.
- (3) 제2단계까지의 합산점수 동점자의(최종성적 동점자의) 경우 다음의 순서로 선발합니다.
 - ① 제1단계 성적 합산점수 고득점자
 - ② 서류심사성적과 법학적성시험성적 합산점수 고득점자
 - ③ 심층면접성적 고득점자
 - ④ 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 결정
- (4) 심층면접 결시자는 불합격 처리합니다.
- (5) 합격권 안에 들었으나 성적이 현저하게 낮아 입학할 허가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자는 본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할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6) 합격한 자가 정해진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합격을 취소합니다.
- (7) 지원 자격 유무를 판정하는데 필요한 제출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결격 처리합니다.

11. 이의신청

입학전형의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및 불복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합니다. 이후의 절차는 관련법령 및 본 법학전문대학원 학칙과 관련규정 등에 의해 진행됩니다.

12. 입학전형 위반자 조치사항

입학전형 필수요소법학적성시험(LEET)성적, 학부성적, 공인어학성적을 위·변조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년도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을 무효로 하고, 당해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연도 5년간 법학적성시험(LEET)의 응시 자격을 제한합니다.

13. 원서접수

(1) 인터넷 원서접수: 입학원서 접수는 인터넷으로만 실시합니다.

(2) 원서접수 기간 및 장소

- 접수기간: 2023.9.18.(월) 9:00 ~ 9.22.(금) 18:00까지(접수기간 중 24시간 접수 가능)
- 접수장소: (주)유웨이어플라이(<http://www.uwayapply.com>)

(3) 원서접수 방법(상황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도 있음)

- 인터넷 원서접수 시 스캐닝 한 사진(최근 3개월 이내에 촬영한 인물 뒤 배경이 없는 상반신 사진) 파일을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 접수업체에서 지시하는 접수방법과 유의사항을 반드시 엄수하여야 합니다.
 - ① 인터넷 원서접수 사이트[(주)유웨이어플라이(<http://www.uwayapply.com>)]에 접속
 - ② 원서접수 대학 중 중앙대학교 선택
 - ③ 원서작성 유의사항 확인
 - ④ 입학원서 작성(모든 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
 - ※ 원서 기본자료 입력 완료 시점
 - 원서작성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력한 후 저장을 완료한 상태(사진 업로드 포함)
 - 접수마감일 [2023.9.22.(금)] 18:00 정각까지는 입력을 완료하고, 저장을 해야만 접수가 가능하며, 저장하지 않았을 경우 접수가 불가능 합니다.
 - ⑤ 전형료 결제(신용카드, 계좌이체 등)
 - ⑥ 접수 완료 확인 후 입학원서 및 수험표 출력
 - ※ 원서접수 완료 후에는 수정, 취소 및 전형료 환불 불가
 - ⑦ 서류제출 [2023.9.18.(월) ~ 9.25.(월) 9:00 ~ 17:00]
 - 단,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임. 점심시간(12-13시)은 접수하지 아니함.

(4) 원서접수 시 유의사항

- 원서접수 마감일시: 2023.9.22.(금) 18:00 정각(접수업체 서버시간을 기준으로 함)
- 원서접수 완료 후에는 원서의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신중히 작성(입력)하여야 합니다.
- 원서접수 완료 후에는 취소가 불가능하오니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에 기재된 내용과 같아야 하며, 주소나 전화번호 등 연락처는 전형 기간 중 사용되므로 변경될 경우 즉시 본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02)820-6488]로 통보해야 합니다.
- 기타 인터넷 접수 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해야 합니다.
 - ※ (주)유웨이어플라이(<http://www.uwayapply.com>) : 1588-8988

(5) 전형료

구분	전형료	비고
일반전형, 특별전형	250,000원	제1단계 탈락자는 80,000원 환불

(6) 전형료 반환

부득이한 사유로 원서접수를 취소할 경우, 본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에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아래와 같이 전형료를 반환합니다.(원서접수 수수료는 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지급한 것이므로 공제한 후 반환합니다.)

구분	반환금액	비고
원서접수 마감 전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 모두 반환	※ 전형료 반환은 원서 작성 시 기재한 계좌로 이루어집니다.
원서접수 마감 이후 7일 경과 전	원서접수 수수료를 제외한 전형료의 50% 공제 후 반환	
원서접수 마감 7일 경과 이후	반환하지 않음	

14. 추가합격자 발표 및 충원

(1) **추가합격자 발표:** 추가합격자는 개별 합격 통지를 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반드시 지정된 합격자 발표일에 본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http://lawschool.cau.ac.kr>)에서 합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 또는 컴퓨터 조작 미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구분	발표		등록	
	일시	장소	기간	장소
1차 추가합격자(예정)	2024.1.5.(금)	본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school.cau.ac.kr)	추후 확정	본교 지정 금융기관 (추후 확정)
2차 추가합격자(예정)	추후 확정	본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 (http://lawschool.cau.ac.kr)	추후 확정	

※ 2차 이후의 추가합격자에 대해서는 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개별적으로 우선 통보합니다.

(2) 충원

- 등록 포기자 충원을 위한 예비후보자는 합격자 사정 시 차점자 순으로 확정하여 두고, 결원 발생에 따라 순차적으로 충원합니다.
- 등록 포기자 충원은 비법학사 및 타대학 쿼터 비율에 맞게 충원합니다.
- 추가합격 사실 통보 시 본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취하는 방법(전화)으로 연락이 닿지 않는 자는 선순위의 예비후보자라 할지라도 충원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15. 등록 및 등록포기

(1) 등록

본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 또는 추가 합격되었을 때는 지정된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기간 내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등록으로 인한 등록포기로 고지 없이 불합격 처리됩니다.

(2) 등록포기

본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였으나 정해진 등록기간에 등록할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본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로 등록포기각서(지정양식) 제출 : 직접 방문 및 팩스(02-816-6760) 제출

※ 정해진 절차에 따라 등록포기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3) 이중등록자

- 이미 등록한 자가 타교에 추가합격하여 이동 시, 타교 등록 전 반드시 기 등록한 학교에 등록을 포기해야 합니다. [등록포기각서(지정양식) 제출 : 직접 방문 및 팩스(02-816-6760) 제출]
- 등록 마감일 후에 2개 이상의 대학원에 등록되어 있어 이중등록으로 확인될 경우 합격 또는 입학허가가 취소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4) 등록금 환불

- 본 법학전문대학원에 합격하여 등록하였으나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유서와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한해 이미 납입한 등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 등록금 환불은 본 대학교의 관련규정에 따릅니다.

(5) 등록 유의사항

- 가상계좌란 중앙대학교와 금융기관의 제휴를 통해 학생 개인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등록금 등을 수납하는 제도로써 학생 개개인의 고유계좌이므로 타인에게 양도 또는 공유할 수 없습니다.
- 수업료 등 등록금고지서 납부내역 내용에 명시된 합계와 정확히 일치해야 등록이 완료됩니다.

(6) **등록금 납부확인 :** 본 법학전문대학원 홈페이지-입학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제출서식

자기소개서 작성안내

○ 작성 시 유의사항

- (1) 자기소개서 작성 전에 유의사항을 반드시 정독한 후 작성할 것.
- (2) 입학전형의 중요한 평가 자료이므로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하며, 본인이 아닌 타인이나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3) *.HWP로 작성한 후 출력하여 서명한 원본을 증빙서류와 함께 등기우편 혹은 직접 본 법학전문대학원 행정실로 제출할 것.
- (4)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원자는 자기소개서, 기타 제출서류 등에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전형에서 특혜를 받거나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됨(광의적 직종명 기재 시 감점조치 함).
- (5) 자기소개서 내 본인 이름 및 출신대학명 등 개인식별정보 기재 시 감점조치 함.
- (6) 이를 위반한 때에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음.

구 분	기재예시	불이익 내용
실명 등 특정가능정보 기재 시	① 부모·친인척의 실명 기재 ② 아버지가 ○○지방법원장	실격조치
직장(직위, 직업)명 기재 시	① ○○○에서 근무하신 아버지 ② 검사장을 지내신 큰아버지 ③ 법조인(변호사, 검사, 판사 등), 교수, 언론인, 정치인, 공직자(공무원) 등	
광의적 직종명 기재 시	①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② 할아버지부터 법조업에 종사하여 ③ 회사를 다니던 아버지	감점조치

※ 간접적으로 법조 등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직업군을 암시하는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됨.

※ 단, 특별전형의 경우에만 역경 극복 등 경험 설명을 위해 광의적 직종명 기재를 예외적으로 인정함.

- (7) 각 항목의 내용은 시간 순으로 기술(단, 최근 사항을 나중에 기재)
- (8) 각 항목 관련 증빙서류(원본)가 있을 경우에는 첨부하여 제출(단, 추천서는 제외), 경력/면허 소지자는 반드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만 인정되며, 기록은 되어 있으나 증빙서류가 없는 것은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9) 제출 시 반드시 누락·낙장 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할 것.

자기소개서(1-1)

■ 지원자 인적사항

모집군	가 군	수험번호		전형유형	<input type="checkbox"/> 일반전형 <input type="checkbox"/> 특별전형
성명				생년월일	년 월 일
휴대전화					

지원자 확인 서약서

- 본인은 자기소개서의 기재사항과 제출하는 서류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본인은 자기소개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또는 기재금지사항을 기재한 경우 실격 또는 입학(허가)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 본인은 자기소개서를 입학 후 학생지도 자료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3년 월 일

지원자

자필서명 또는 날인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귀하

자기소개서(1-2)

자기소개서 작성요령(작성 시 삭제 가능)

- ▶ 글자형식 『글꼴(신명조체), 글자크기(10 포인트), 장평(100%), 자간(0%), 줄 간격(180%)』에 따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본인 이름, 출신대학, 출신대학을 유추할 수 있는 동아리(학회)명,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전형에서 특혜를 받거나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은 기재를 금지합니다. (광의적 직종명 기재도 금지함)

1. 학력 (고등학교부터 편입을 포함한 모든 학력사항을 기재할 것)

출신학교명	기간	전공	졸업(예정)연도	
	소재지(시.군.구/읍.면.동)까지 기재할 것			
	재학 중 징계사항 및 자퇴/제적사항(년월/내용/사유)			
	~			
	~			
	~			

2. 경력

<학사과정 중>

기관명/부서명 기관소재지(시.군.구/읍.면.동)	기간	담당업무 상세 (1일 평균 근무시간)	비고 (프로그램명 등)
	~ (년 개월)		

<학사과정 졸업 후>

직장명/부서명 직장소재지(시.군.구/읍.면.동)	기간	담당업무 상세 (1일 평균 근무시간)	비고
	~ (년 개월)		

※ [2. 경력-학사과정 졸업 후] 칸은 4대 보험에 가입된 경력이어야 하고, 학사졸업 후 전체 합산 경력이 2024년 2월 28일로부터 역산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그 경력들 중 일부가 1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2번 란에 모두 기재하도록 함. 단, 전체 합산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3번 란에 기재함.

자기소개서(1-3)

3. 기타 활동내역(인턴, 사회활동 및 봉사, 장학, 수상, 연수 등)

<학사과정 중>

활동명	기간	설명(간략하게)	주관기관
	~		
	~		
	~		

<학사과정 졸업 후>

활동명	기간	설명(간략하게)	주관기관
	~		
	~		
	~		

- ※ 주관기관: 대학명 등 기재금지사항을 유추할 수 있는 경우 비실명처리 후 기입해야 함.(예: **장학재단,**학회 등)
- ※ [3. 기타 활동내역-학사과정 졸업 후] 칸은 전체 합산경력이 1년 미만인 경우의 사회경력 및 기타 활동 등에 대하여 기재함.

4. 자격, 면허, 국가고시합격 등

기간	종류 또는 명칭	취득(합격)일자	발급기관
학사과정 중			
학사과정 졸업 후			

- ※ 교통관련 면허는 제외함.

5. 외국어능력

기간	종류	취득년월일	점수	발급기관
학사과정 중				
학사과정 졸업 후				

- ※ 유웨이어플라이 인터넷 원서접수 시 입학원서에 기재한 영어성적은 해당 작성에서 제외함.
즉, 입학원서에 기재한 영어성적 이외 다른 외국어 성적이 있을 경우 작성함.

자기소개서(1-4)

6. 자기소개서

[6-1] 지원자의 과거와 현재(2,500자 이내, 공백제외)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지원자에 대해 기술하십시오.(작성 시 삭제 가능)

- 본교의 지원동기 및 인생의 가치관
- 대학 입학 이후의 경험, 사회활동 및 봉사활동에서 특기할 만한 사항
- 지원자가 제출한 학업사항에서 설명이 필요하거나(전공 및 과목 선택 등의 이유나, 재수강 이유(해당하는 경우)) 강조하고 싶은 사항
- 그 밖의 지원자의 특별한 경쟁력이나 강조하고 싶은 사항 등등

자기소개서(1-5)

[6-2] 지원자의 앞으로의 비전(1,000자 이내, 공백제외)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지원자의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 기술하십시오.(작성 시 삭제 가능)

- 지원자의 주된 관심분야
- 지원자의 졸업 후 진로계획 (졸업 이후 5년 및 10년 후로 나누어 기술) 등등